

○金錫浩委員 用途廢止 운운한 部分, 그것은 절대적으로 道路率을 높이겠다 하는 次元에서 안 될 것이다 하는 答辯을 前任局長께서 해 준 바 있습니다. 그것을 왜 여기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? 그런 答辯은 앞으로 삼가하세요.

○都市計劃局長 崔在範 알겠습니다.

○金錫浩委員 그리고 지금 보세요. 그렇게 현격하게 동쪽 部分에 했더라면 이번에 올릴 적에 동시에 올렸으면 行政의 浪費가 안 됩니다.

이번에 왜 같이 都市計劃에 立案해서 안 올립니까? 4m가 아니라 6m라도 같이 올려 줘야지요. 委任事項입니다. 委任事項이면 그러한 背景說明을 했다는지 안했는지를 하는 管轄區廳으로부터의 說明을 듣고 그 部分도 얘기를 우리한테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?

○都市計劃局長 崔在範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이렇게 地域을 決定해 주고 나면 이것에 따르는 상세한 建物配置計劃이 나올 것 같습니다. 또 거기에 따라서 區廳舍와 區議會 廳舍가 제가 알기로는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建物 設計가 다 되면 거기에 따르는 交通影響評價를 별도로 節次를 밟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럴 때 이 交通疏通 問題가 자연히 深度 있게 檢討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

○金錫浩委員 어떻게 價格問題가 擧論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면 미리 道路를 指定해서 했어야지, 그렇지 않습니까?

○都市計劃局長 崔在範 그 問題는 저희들이 設計過程에서 충분히 區廳으로 하여금 金委員님의 指摘하신 問題가 反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○金錫浩委員 어떻게 불행한 午前會議였습니다.

議員으로서의 身分을, 정확히 位置도 모르고 同僚委員들이 前半期에 다루었던 이러한 速記錄에 나타난 것도 모르고 無條件 해 주자 하는 同僚委員이 있었습니다. 이것은 議員 身分으로서의 딱 價値觀이 떨어지는 한심한 質

疑라고 指摘하고 싶습니다.

이상입니다.

○委員長代理 申龍吉 장시간 東大門 公用廳舍 關係를 深度 있게 다루었습니다.

그래서 金錫浩委員 양해가 되신다면 아까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可決하자는 金順愛委員의 動議에 再請이 있었습니다.

委員 여러분,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하는 바 異議 없으십니까?

○金錫浩委員 委員長님, 지금 제 얘기는 동쪽에 道路를 貫通을 시키는 條件附 提示를 또 해 주는 것입니다.

○委員長代理 申龍吉 알겠습니다.

(「그러면 修正動議를……」하는 委員 있음)

○金錫浩委員 아니, 일단은 委任事項이니까 區廳한테 委任해 주고 그런 條件은 다음에…….

○委員長代理 申龍吉 그러면 異議 없으십니까?

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

그러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

(議事棒 3打)

(參 照)

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

의견청취의 건

제출년월일: 1994.10.31.

제 출 자: 서울특별시장

1. 건 명: 도시계획(용도지역, 시설)결정 및 변경결정

2. 제안이유

○현 동대문구 청사가 건물노후, 부지협소 및 용도부적합 등으로 대민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하여 구 동마장터미널 부지로 이전코자 도시계획시설변경(학교→공용의청사) 결정하고

○구청입지에 따른 지역여건 및 개발잠재력 등을 감안 부지일대 용도지역을 변경(일반상업지역→준주거, 일반주거지역)결정코저 함.

3. 주요요지 ○도시계획시설(학교, 공용의청사) 결정 및		변경결정 조서		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(㎡)	비고
기정	학교	용두동 39-108일대	14,384.5	4,351평
변경	-	"	0	폐지
결정	공용의청사	용두동 39-108일대	11,028.6	3,336평
○도시계획(용도지역)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				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(㎡)	비고
기정	일반상업지역	용두동 33-4일대	11,239.8	3,400평
변경	-	용두동 33-4일대	0	폐지
결정	준주거지역	용두동 33-9일대	7,954.0	2,406평
결정	일반주거지역	용두동 39-8일대	3,285.8	994평
4. 참고사항 ○공람공고시 주민의견: 1건 -제출자: 강근영외 27인(동대문구의회의원) -내용: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하여 상업지역 존치요망 -주관부서의견: 지역여건 및 개발잠재력을 감안 준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함이 타당함.		측 도로개설비가 용두동 33-4일대 학교해제용지보다 저렴할 경우 입안대로 시행 ○'93.6.22: 재검토 지시(시→구) ○'94.10.1: 도시계획(용도지역 및 시설) 결정 및 변경 재입안(구→시)		
5. 그간 추진경위 ○'92.2.21: 학교해제 및 공용의청사 결정 입안(구→시) ○'92.8.25: 시의회 의견청취 요청 ○'93.6.16: 시의회 본회의 심의 -공용의청사 규모에 대하여 3개안중 시장이 택일하는 것으로 의결 -전체결정안(4,351평) -학교해제부지 전체를 공용의청사로 결정 -위치조정안(3,067평) -공용의청사를 서쪽으로 약 40m(1브릭) 이동 위치변경 -당초입안안(3,082평) -공용의청사부지중 군소토지 소유자(4필지 119평)의 보상금과 인근동		○委員長代理 申龍吉 議案番號 1155番, 城北區 貞陵洞 山16-1, 山16-35 一帶 都市計劃施設 變更決定에 대해 意見 있으시면 發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丁寅變委員 말씀하십시오. ○丁寅變委員 丁寅變委員입니다. 高等學校하고 大學校하고 따로 決定하는 데는 異議가 없습니다만, 大學校 施設設置 基準 施設에서 25.5%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이럴 때 大學校에 대한 存立與否는 어떤지 執行部로부터 答辯을 듣고 싶습니다. ○都市計劃局長 崔在範 都市計劃局長 答辯드리겠습니다. 大學은 大學施設基準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大學施設基準이 있는데 우리 서울에 94年 3月 1日자로 大學校가 40個 校였습디다. 그런데 이 學校別로 施設 保有率이 전부 다 다릅니다. 그런데 이 중에서 韓國放送通信大學 같은 경우에는 保有率 自體가 통계숫자가 안		